

소규모 분할합병 공고

주식회사 두산은 주식회사 엔세이퍼와 2013년 6월 28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두산이 주식회사 엔세이퍼의 업무대행업부문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두산 : 주식회사 엔세이퍼 업무대행업부문 = 1 : 0
3. 소멸회사(분할합병회사)의 현황
가. 상 호 : 주식회사 엔세이퍼
나. 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
4. 합병기일 : 2013년 9월 1일
5. 주식회사 두산과 주식회사 엔세이퍼 분할합병은 상법 제 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3년 7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 간 : 2013년 7월 12일 ~ 2013년 7월 26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
 - 1) 명부주주 : 2013년 7월 26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(02-3398-1281)
 - 2) 실질주주 : 2013년 7월 23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 530의 11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주식회사 두산과 주식회사 엔세이퍼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3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주소 :

2013년 7월 12일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-12
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)
주식회사 두산
대표이사 이재경